

국방 ·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주승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17.

발의자 : 주승용 · 이춘석 · 장정숙

김관영 · 장병완 · 최도자

박준영 · 강창일 · 노웅래

이용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방 · 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이전하는 국방 · 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기존의 용도폐지된 국방 · 군사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이전 방식인바, 이는 국유재산의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, 기부자와 양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세입 · 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정부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방 · 군사시설사업의 해당 국방 · 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 ·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방 ·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 ·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 · 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 · 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 ·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 · 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기부 및 양여의 특례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12조(기부 및 양여의 특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국방·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그 국방·군사시설사업의 현황을 매년 5월 31일 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